

관세연구 23-02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2023. 12.

홍병진·이재선

관세연구 23-02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2023. 12.

홍병진·이재선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병 진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관세연구팀 특수전문직 2급

목 차

I. 서론	1
II. 구독경제 개요	3
1. 구독경제와 구독료	3
가. 구독경제 및 구독료의 개념	3
나. 구독경제 현황	4
2. 구독경제의 구분	8
가. 제공 자산에 따른 구분	10
나. 결정 주체에 따른 구분	11
다. 소비 방식에 따른 구분	13
III.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	16
1. 소액의 정기구매 물품	17
가. 구독 사례	17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19
2.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	21
가. 구독 사례	21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24
3.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물품	26
가. 구독 사례	26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29
4.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30
가. 구독 사례	30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34
IV.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36
1. 정기구매 물품의 소액면세	36
가. 소액면세 규정	37
나. 반복 수입되는 소액면세 제한의 필요성 검토	42
2.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할인	44
가. 할인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례	45
나. 정기구매 물품에 대한 할인 인정 여부 검토	52
3. 대여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57
가. 재수출 감세 또는 환급 규정	58
나. 대여 후 반환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필요성 검토	63
4. 기능구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	65
가. 수입 후 기능 활성화 관련 사례	65
나. 기능구독에 대한 대가의 실제지급금액 포함 여부 검토	69
V. 시사점 및 결론	72
참고문헌	75

표 목차

〈표 IV-1〉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1(우리나라)	45
〈표 IV-2〉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2(우리나라)	49
〈표 IV-3〉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우리나라)	66
〈표 IV-4〉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EU)	68

그림 목차

[그림 II-1] 구독경제 시장규모 전망	5
[그림 II-2]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6
[그림 II-3] 소프트웨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7
[그림 II-4] 미디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7
[그림 II-5] 제조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8
[그림 III-1] 주기적 보충을 위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18
[그림 III-2] 공급자가 추천한 품목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19
[그림 III-3] 할인을 제공하는 정기배송물품 사례	22
[그림 III-4] 사은품을 제공하는 정기배송 물품 사례	23
[그림 III-5]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포르쉐)	27
[그림 III-6]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현대자동차)	28
[그림 III-7]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BMW)	32
[그림 III-8]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벤츠)	34

I. 서론

- 과학기술의 발달과 소비동향의 변동 등으로 물품의 사용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물품의 소비방식이 구매에서 구독으로 확장되고 있음
 - 소비자는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경험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여하거나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정기적·자동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구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구독료라고 함
 - 음악, 영상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던 구독경제는 게임, 의류, 식료품, 자동차 등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이 구독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의 물품거래에도 이를 활용한 거래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
 - 물품이 구독의 형태로 정기적·반복적으로 수입되거나 대여 또는 사용권한의 부여를 통해 물품이 수입되기도 함
 - 또한 수입물품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였다가 구독을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함

- 이러한 경우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구독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이 수입되는 때마다 소액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

- 구독의 형태로 판매되는 수입물품의 실제가치가 구독료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구독에 대한 대가로 사은품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될 수도 있음
 - 또한 대여나 접근권한의 허용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거나 물품의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수입된 후 해당 기능의 잠금이 구독을 통해 해제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독료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관세 과세 시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구독료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나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국내의 규정이나 과세 사례를 통해 구독료의 적절한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을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구독경제의 개념과 현황, 구독료와 관련된 수입물품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구독경제의 개념과 현황, 여러 기준에 따른 구분과 활용사례를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제II장에서 살펴본 구독경제의 특징을 기초로 구독료와 관련한 수입물품의 사례와 해당 사례에 관한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검토함
 - 제IV장은 제III장의 구독료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나 판례를 살펴봄
 - 제V장에서는 구독료와 관련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를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II. 구독경제 개요

1. 구독경제와 구독료

가. 구독경제 및 구독료의 개념

- 구독경제란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도록 설계된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용어임
 -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독을 결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공급자는 일정 주기 또는 기간 자동으로 물품 등을 반복하여 공급하는 형태임

- 구독의 사전적 의미는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는다’로¹⁾ 간행물은 일·주·월간 등의 주기로 반복적인 공급과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구독의 사전적 의미는 구독경제가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본질적 특성을 보여줌

- 이와 같이 구독경제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가 모두 정기적·지속적으로 제공 및 지불되며, 이때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대가를 구독료라 함
 - 구독료는 공급받는 물품 또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구독기간 동안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청구되며, 일반적으로 물품 등을 단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함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f0fc780f2dc486bb105511f2a65eaa6>, 검색일자: 2024. 2. 2.

-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는 한 번의 구독 결정으로 지속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공급자에게는 구독료라는 정기적인 수익을 제공함
 - 소비자는 구독을 통해 소비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매번 투입하지 않고도 수요에 맞는 시기, 수량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공급자 또한 구독으로 장기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구매자인 구독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화·맞춤화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음
 - 소비자의 만족도와 충성도는 장기 구독과 신규 구독자의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자 등의 매출과 데이터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
- 이러한 장점에 따라 구독경제는 음악, 영상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에서 생필품의 정기배송, 고가품의 대여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구독경제는 정액의 구독료를 지급하면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을 시작함
 - 현재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주류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하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대여하는 등 다양하게 구독경제가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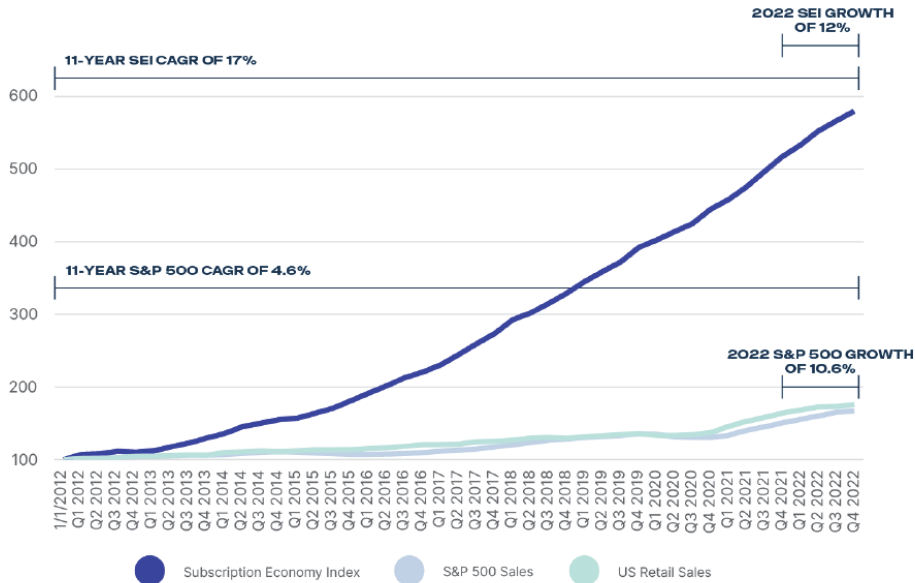
나. 구독경제 현황

- 구독경제의 시장규모는 2020년 약 6,500억달러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1.5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특히 2020년에는 전체 구독경제 시장 규모의 약 35%를 차지했던 전자상거래가 2025년에는 그 비중이 약 46%로 상승하며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2) Zuora, "UBS Declares: It's Worth Investing in the Subscription Economy," <https://www.zuora.com/subscribed/ubs-declares-its-worth-investing-in-the-subscription-economy/>, 검색일자: 2024. 2. 5.

[그림 II-1] 구독경제 시장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자료: statista, “Market size of the digital subscription economy worldwide in 2020, with a forecast for 2025, by segmen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5064/market-size-digital-subscription-economy-worldwide-by-segment/> 검색일자: 2024. 2. 5.

- Zuora³⁾가 개발한 구독경제지수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 기반 기업의 매출은 제품 기반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⁵⁾의 기업보다 3.7배 빠르게 성장함⁶⁾
- 같은 기간 구독 기반 기업은 연평균 17% 성장한 데 비해 S&P 500 기업은 4.6%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3) 미국의 기업용 구독경제 결제시스템·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조혜정, 「구독경제의 현황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9-03호, 중소기업연구원, 2019, p. 2)

4) Zuora의 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을 기반으로 구독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업규모의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Zuora, *The Subscription Economy Index*, 2023,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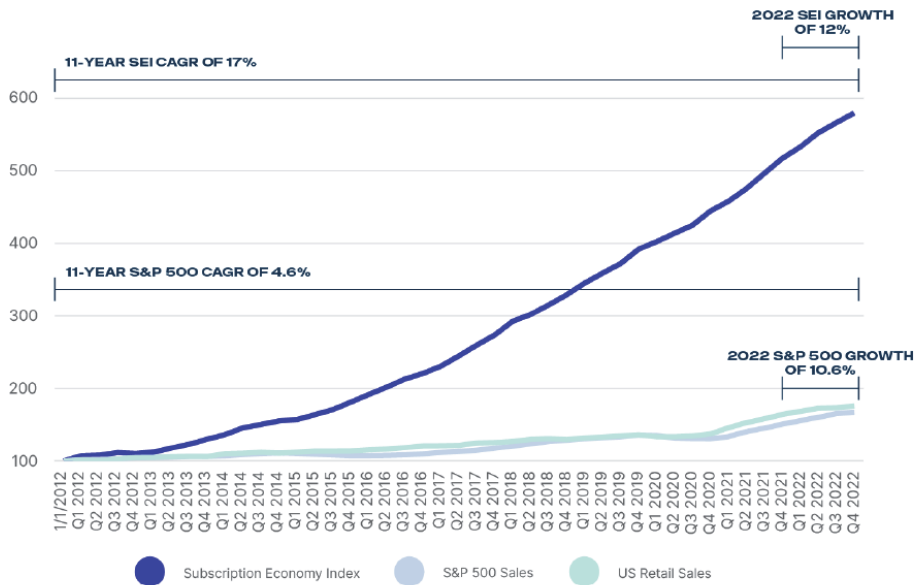
5) 미국의 Standard & Poor가 공업주(40종목), 운수주(20종목), 공공주(40종목), 금융주(40종목)를 종합하여 작성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대상이 되는 500종목은 기업규모·유동성·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됨(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64&cid=40942&categoryId=40507>, 검색일자: 2024. 2. 6.)

6) Zuora(2023), p. 4

- 2022년의 경우 12%의 성장률을 보인 구독 기반 기업은 10.6%의 성장률을 나타낸 S&P 500기업을 앞지름

[그림 11-2]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단위: 2012. 1분기=100)



자료: Zuora(2023), p. 4

- 구독 기반 기업의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문⁷⁾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제조 부문⁸⁾은 2021년 성장세가 하락하였다가 2022년 회복함⁹⁾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부문의 2022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12.3%, 미디어 부문은 4.6%, 제조 부문은 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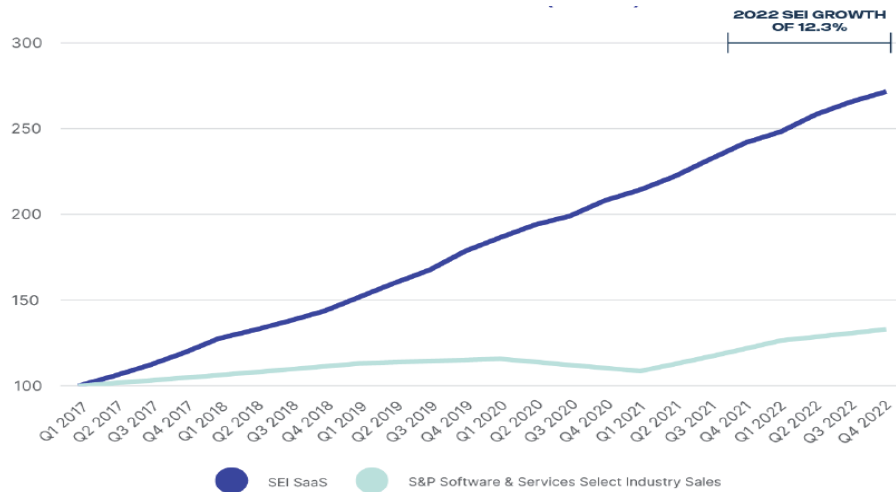
7)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포함함(Zuora(2023), p. 13)

8) 제조 서비스, 산업별 소프트웨어 제공, 산업 디자인, 증강비 및 도구 제조업체를 포함함(Zuora(2023), p. 13)

9) Zuora(2023), pp. 9~11

[그림 II-3] 소프트웨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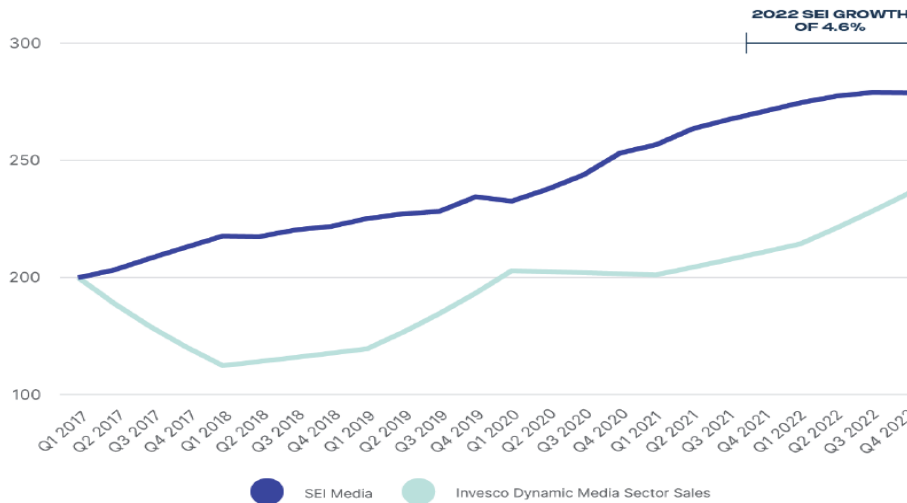
(단위: 2017. 1분기=100)



주: SEI(Subscription Economy Index) = 구독경제지수
 SaaS(Software as a Service)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자료: Zuora(2023), p. 9

[그림 II-4] 미디어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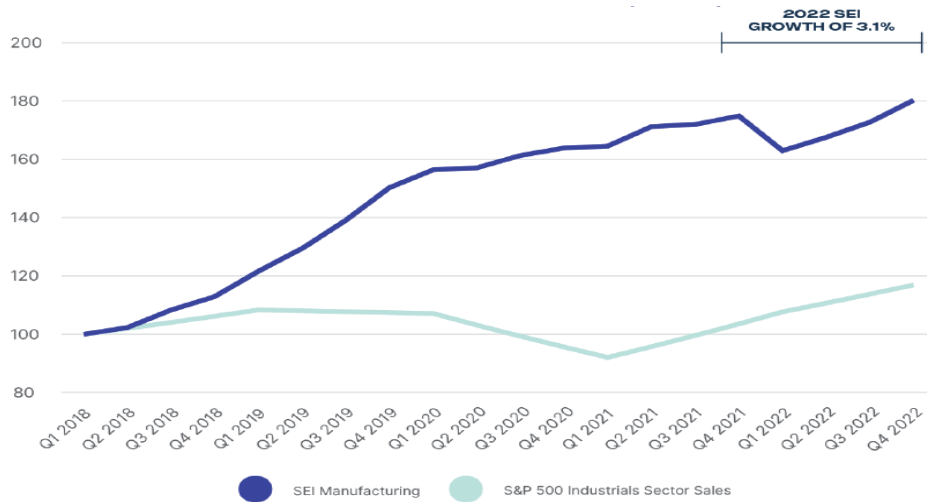
(단위: 2017. 1분기=100)



자료: Zuora(2023), p. 10

[그림 II-5] 제조 부문 구독 기반 기업 성장 추이(구독경제지수)

(단위: 2018. 1분기=100)



주: SEI(Subscription Economy Index) = 구독경제지수
 자료: Zuora(2023), p. 11

2. 구독경제의 구분

- 구독경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구독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유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구독경제를 특징별로 유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공급자에게는 구독경제 모델 도입을 위한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음¹⁰⁾
- 일반적으로 구독경제를 소비자의 이용방식에 따라 정기배송형, 무제한이용형, 대여형으로 구분함¹¹⁾

10) 백혜현·김길신, 「공급자 관점의 구독경제 유형화와 디자인 팩터 사례 연구」, 『경영건설링연구』, 제 21권 제3호, 경영건설링학회, 2021, p. 332

- 정기배송형은 일정량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형태의 구독유형임
 - 무제한이용형은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형태임
 - 대여형은 관리서비스를 포함하여 물품을 대여하는 형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 안에서 품목을 변경하여 대여하는 형태 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구독의 이유와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정기배송과 정기결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함¹²⁾
- 정기배송형은 동일한 물품 및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재고보충형과 다양한 물품을 추천받고 활용하는 큐레이션 제안형으로 구분됨
 - 정기결제형은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접근권한형과 물품을 대여하는 대여형으로 구분됨
- 그러나 구독경제는 정기적·자동적 공급 및 지불이라는 특징을 제외하면 공급주기·물품·방식 등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독경제 형태를 포괄하는 유형화는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특정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을 구독으로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이용방식에 따른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어려움
- 또한 동일한 분류단계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독경제를 유형화함에 따라 하나의 구독모델이 여러 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음
- 정기배송형과 정기결제형으로 분류 후 이를 재분류하는 방법은 1차 분류기준에 이용방식과 결제방식이 혼용되어 있어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11) 조혜정(2019) pp. 6~7; 박현길, 「구독경제」, 『마케팅』, 53(7), 한국마케팅연구원, 2019, p. 34; 심혜정,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Trade focus 2021년 6호, 한국무역협회, 2021, pp. 2~3

12)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2, 2021, p. 2

- 가령 추천받은 의류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대여하는 경우 이는 정기배송형의 큐레이션 제안형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정기결제형의 대여형에 해당되기도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독경제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구독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구독경제를 유형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 조합의 모든 경우가 구독모델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준만 제시하고자 함

가. 제공 자산에 따른 구분

- 구독경제로 공급되는 자산의 형태는 물리적 형상 및 형태의 유무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상 및 형태가 있는 유형물은 물품에 해당되며, 무형물의 공급은 서비스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재화를 구성하는 물건을 구독경제의 물품으로, 용역을 구독경제에서의 서비스로 볼 수 있음
 -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¹³⁾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의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¹⁴⁾
 - 한편 재화에는 권리도 포함되지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¹⁵⁾ 뜻하는 권리는 아직까지 구독으로 공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¹⁶⁾

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1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6)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 권한을 구독자에게 부여하는 형태의 모델에서의 권한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그 권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형태를 구분해야 함

-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권리가 구현·체화된 물품 등의 매출과 연계되어 계산되므로 정액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구독모델로는 적합하지 않음

- 유형의 물품은 물리적 형체가 있으므로 촉감을 통해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후 소유할 수 있음¹⁷⁾
 - 이에 따라 물품의 구독은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배송받거나 자동차, 가전제품을 대여하는 형태가 많음
- 반면 구독되는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어 저장 및 진열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의 이전이 포함되지 않음¹⁸⁾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는 접근 권한을 허용하거나 무체물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독이 이루어짐

나. 결정 주체에 따른 구분

- 구독경제는 제공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소비자와 공급자 중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전통경제에서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구독경제는 공급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물품 등을 공급하기도 함
-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주체인 경우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전에 선택하고, 공급주기가 도래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해당 물품 등을 제공받음
 - 소비자가 선택한 물품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공급빈도, 물품 등의 종류, 공급량 등 구독조정권을 온전히 소비자가 제어하는 방식임¹⁹⁾

17) 백혜현·김길선(2021), p. 335

18) 백혜현·김길선(2021), p. 335

19) 백혜현·김길선(2021), p. 335

- 이는 소비자가 주문 및 결제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자동으로 물품 등이 공급되는 구독경제의 편의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품목의 변화는 필요 없지만 일정 기간 내에 소모되는 생필품의 정기배송의 경우 주로 소비자가 사전에 품목과 공급주기 등을 선택하는 형태가 많음
 - 대표적으로 달러셰이브클럽의 면도용품 정기구독²⁰⁾, 와이즐리의 면도·위생용품·건강기능식품 정기구독²¹⁾, 돌체구스토와 일리카페의 커피캡슐 정기구독²²⁾ 등이 있음

- 이와는 반대로 공급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소비자는 물품 등의 구성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는 형태도 있음
 - 공급자가 최종적으로 물품 등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배송 전까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배송을 받는 순간 소비자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는 형태임²³⁾

-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전문지식을 갖춘 공급자가 대신 부담하며, 소비자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구성의 물품 등을 접할 수 있음
 -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선택의 폭이 넓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큰 경우 이러한 형태의 구독모델이 선호됨
 - 전통주를 정기구독으로 제공하는 술담화의 경우²⁴⁾ 종합, 증류주, 약·청주의 구독박스를 제공하면서 매일 3~4병의 전통주를 공급자가 추천하여 배송함

- 다만 이 경우 소비자 개인의 선호도가 고려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공급자가 소비자의 소비성향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20) 달러셰이브클럽, <https://us.dollarshaveclub.com/>, 검색일자: 2024. 2. 8.

21) 와이즐리, <https://wisely.store/category/%EA%B5%AC%EB%8F%85%ED%95%98%EA%B8%B0/100/>, 검색일자: 2024. 2. 8.

22) 돌체구스토, <https://www.dolce-gusto.co.kr/subscription-event>, 검색일자: 2024. 2. 8.; 일리카페, https://shop.illycaffe.co.kr/order/subscription_main.php, 검색일자: 2024. 2. 8.

23) 김미나·박설우, 「구독경제 유형과 제품 유형 차이가 구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유통협회, 2023, p. 63

24) 술담화, <https://www.souldamhwa.com/subscribe?damhwabox=basic>, 검색일자: 2024. 2. 8.

- 소비자가 정보를 찾는 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취향이 중요한 경우에 적합한 형태임
- 퍼플독은 와인을 정기구독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설문과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와인을 추천 및 배송함²⁵⁾
- 한편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구독모델도 있음
 - 특정 물품군이나 테마를 소비자가 정하면 이 중에서 공급자가 물품 등을 최종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²⁶⁾
- 공급자의 전문성과 소비자의 기호 및 편의성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반영된 구독모델로 소비자는 비교적 적은 탐색비용으로 취향에 맞는 구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의 취향이 중요하지만 물품 등의 선택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미하이삭스²⁷⁾ 양말 정기구독을 공급하면서 소비자가 성별, 용도로 구분된 패키지를 선택하면 매월 새로운 디자인의 양말을 배송하고 있음

다. 소비 방식에 따른 구분

- 구독경제는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는 직접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공유를 중시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각광받고 있음²⁸⁾
 - 구독경제에서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아닌 구독료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물품 등을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받음

25) 퍼플독, <https://www.purpledog.co.kr/subscriptionGuide?tab=02>, 검색일자: 2024. 2. 8.

26) 김미나·박설우(2023), p. 63

27) 미하이삭스, <https://www.mehisox.com/subscription/>, 검색일자: 2024. 2. 8.

28) 조혜정,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KISO 저널』, 제42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p. 45

- 구독경제를 통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구매뿐 아니라 대여, 이용으로 확장되었음
 - 즉 구독경제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 물론 구독경제에서 전통경제의 가장 보편적인 소비 방식인 구매가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구독료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 소모품이나 식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금전적인 가치뿐 아니라 물리적 형태나 가치도 감소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구매방식의 구독모델을 적용해야 함
 - 대부분의 구매 방식의 구독모델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구독료를 일회성 판매가격보다 할인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는 구독경제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하는 물품 등의 변경이 가능하기도 함
 - 이와 같이 대여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은 소비자의 자본 접근성을 낮추고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²⁹⁾
- 이러한 대여 방식의 구독은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로서 고가인 물품에 대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캐딜락의 Book by Cadillac, 볼보의 Care by Volvo, 포르쉐의 Porsche Passport, 도요타의 Kinto one, 현대자동차의 Selection 등의 구독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음³⁰⁾
- 마지막으로 구독경제에서는 소비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함
 - 이 형태의 구독모델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개수나 횟수가

29) 백혜현·김길선(2021), p. 341

30) 백혜현·김길선(2021), p. 340

제한되느냐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음

- 이용 권한이 부여되는 구독모델은 특정한 혜택이나 이익의 제공,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미디어 등의 스트리밍 등이 있음³¹⁾
 -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구독자에게 광고 없는 재생과 같은 혜택을 주며,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등이 이용권한을 구독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테슬라, 벤츠, BMW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의 특정 기능을 구독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함

31) 백혜현·김길선(2021), pp. 333~334

Ⅲ.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

- 구독경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뿐 아니라 이용, 대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인 구독을 통해 구독료 지불이라는 결제 방식으로 제공함
 - 따라서 구독료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대여하는 대가이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불됨
- 반면 관세는 수입물품이 과세대상이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즉 관세는 수입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
- 이와 같이 구독경제에서 제공하는 자산과 관세의 과세대상, 구독료의 성격과 관세의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않아 구독료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가령 구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 또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출해야 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구독경제에서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 반복적인 배송이 필요하고, 구독의 거래당 사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수입을 통한 구독은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음
 - 물품이 반복되어 배송되므로 구독의 경우 국내배송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많은 배송료가 발생하는 해외배송은 하지 않음
 -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을 수입한 후 수입자가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구독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구조를 가짐

- 즉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이고 소비자가 지급하는 구독료는 직접적인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며,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며 해외직구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거점을 이용한 배송비의 절감을 통해 구독경제에서도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등에 위치한 국제물류센터에서 물품이 정기배송되는 경우 배송시간이 단축되고 배송비 부담이 감소되므로 구독이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물류센터에서 물품을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국내배송과 유사한 수준의 배송비로 해외배송 구독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구독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구독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인 구독의 형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구독은 소비재 위주로 공급되었으나 내구재, 전문 정보서비스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지고 있음³²⁾
-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구독료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시 취급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구독 사례가 수입의 형태로 공급되거나 수입물품과 관련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1. 소액의 정기구매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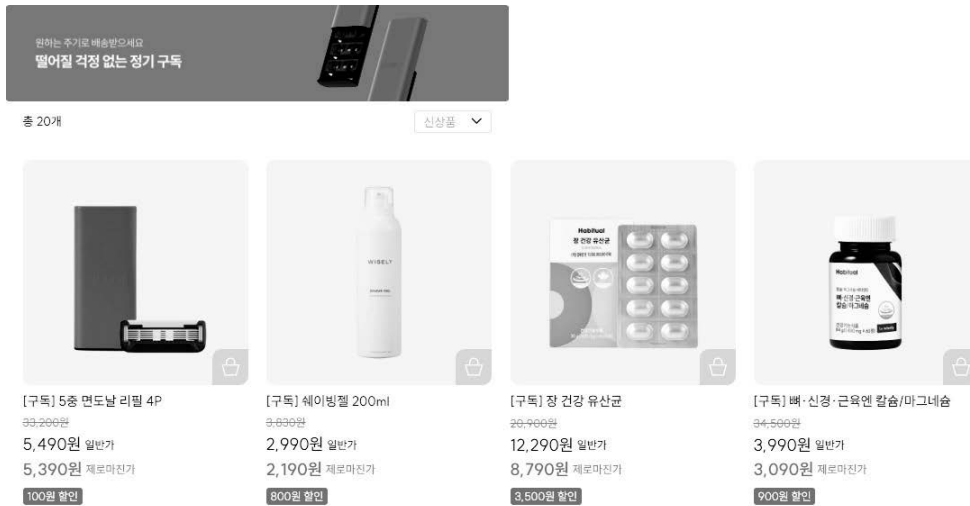
가. 구독 사례

- 구독경제에서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그 품목을 소비자가 사전에 정하거나 공급자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추천하기도 함

32) 심혜정(2021), p. 8

- 주기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물품, 소비자의 취향이 중요한 물품, 품목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물품 등에 정기구매가 활용됨
- 물품의 품목을 누가 선택하든지 정기구매 형태의 구독은 비교적 저가의 소비재인 경우가 많음
 - 반복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므로 비용부담이 적고, 주문이나 구매결정의 편의가 필요한 물품이 소비자가 정기구독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임
- 와이즐리는 정기구독으로 주기적인 보충이 필요한 면도용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면서 대부분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면서 소모되어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하는 저가의 물품을 정기구독으로 제공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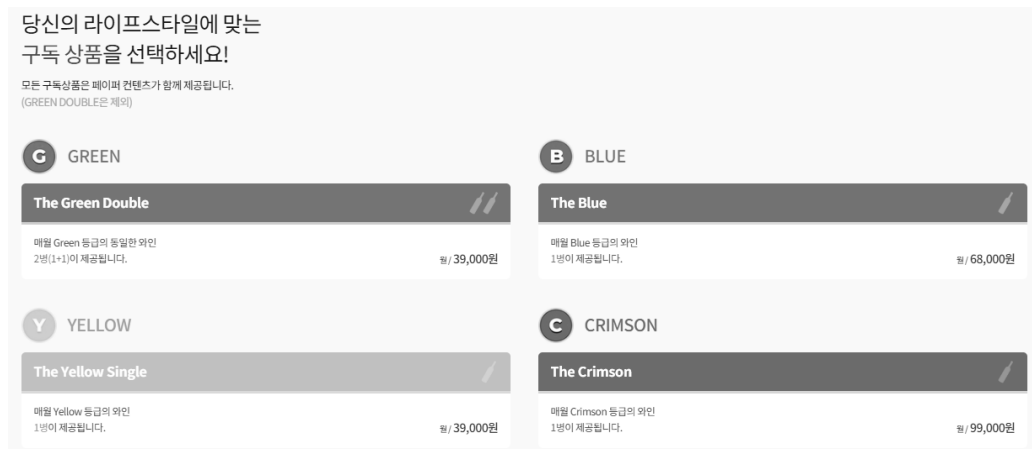
[그림 III-1] 주기적 보충을 위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자료: 와이즐리, <https://wisely.store/category/%EA%B5%AC%EB%8F%85%ED%95%98%EA%B8%B0/100/>, 검색일자: 2024. 2. 14.

- 한편 와인 정기구독업체인 퍼플독은 와인을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4개 등급의 와인을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정기배송하고 있음
- 소비자의 취향이 중요하지만 품목, 생산지 등이 다양하여 탐색비용이 높은 기호품을 공급자가 소비자 분석을 통해 품목을 추천하여 구독판매하고 있음

[그림 Ⅲ-2] 공급자가 추천한 품목이 정기구매되는 소액물품 사례



자료: 퍼플독, <https://www.purpledog.co.kr/subscriptionGuide?tab=02>, 검색일자: 2024. 2. 14.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함³³⁾
- 자가사용되는 소액물품은 국가적 정책목표에 적합하기보다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적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임³⁴⁾
-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해외공급자로부터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독으로 정기배송 받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33) 「관세법」 제9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34)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430

- 소액면세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는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배송비가 별도로 청구되더라도 구독료가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됨
- 이에 따라 구독료가 150달러 이하의 정기구매 물품은 반복적으로 수입되더라도 관세가 면제됨
 - 물품이 정기구독을 통해 얼마나 반복적으로 수입되는지, 반복 수입되는 물품의 합산 가격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1회에 수입되는 물품가격으로 소액면세가 적용됨
- 그러나 소액면세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기구매 물품을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견이 생길 수 있음
 - 소액물품은 경제적 가치가 작아 재정수입의 측면과 국내산업보호 측면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³⁵⁾
- 소액면세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기구매되는 수입물품은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된다는 점에서 그 시장규모가 커진다면 재정수입과 국내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각 수입통관건별 구독료는 소액이지만 반복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합산 구독료는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
 - 또한 정기구독의 해외배송이 활성화된다면 수입물품을 정기배송하거나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정기구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의 가격만으로 소액면세를 적용해야 할지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함
 - 반복 수입되는 정기구매 물품을 구독이라는 하나의 계약에 따른 분할주문이라고 본다면 정기구독 물품 전체에 대해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있음

35) 김기인(2007), p. 430

2.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

가. 구독 사례

- 정기구매 형태의 구독은 소비자가 미리 정한 품목이 반복되어 배송되는 경우와 공급자가 추천하는 품목으로 변경되어 배송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소비자는 정기구매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 정액의 구독료를 지급하며, 품목이 변경되어도 구독료가 변경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품목이 변경되는 정기구매의 경우 물품군에 따라 구독료를 정하며, 물품군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구독료는 변경되지 않음

- 정기구매 시 공급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구독료를 물품이 일회성으로 판매되는 경우보다 할인하여 책정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각 주기마다 제공되는 물품의 실제 가격은 변동되지만 구독료는 정액으로 고정되며, 이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임

- 술담화는 월마다 정해진 테마에 따라 전문가가 전통주를 추천하여 배송하는 정기구독의 경우 단품구매보다 약 16% 할인하고 있음
 - 3~4병의 전통주로 구성된 정기구독박스는 단품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3,000원을 할인하여 판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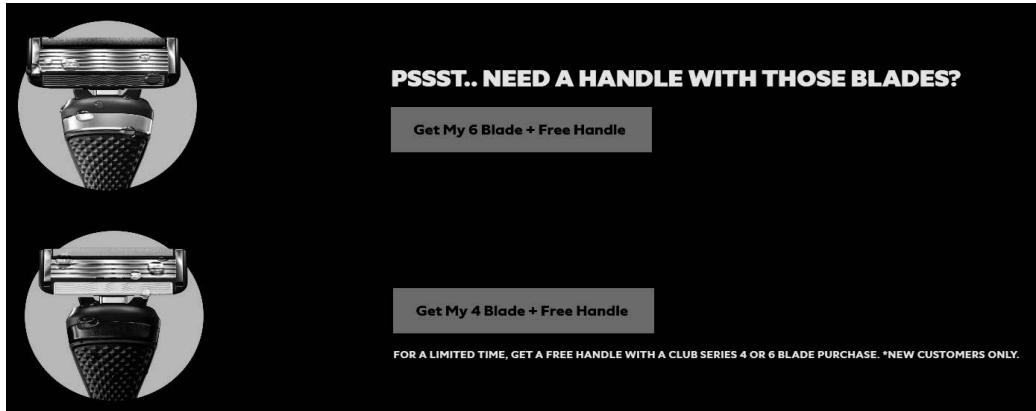
[그림 Ⅲ-3] 할인을 제공하는 정기배송물품 사례



자료: 솔담화, <https://www.sooldamhwa.com/subscribe?damhwabox=basic>, 검색일자: 2024. 2. 14.

- 이 뿐만 아니라 정기구독 물품을 사용하는 데 별도의 기계나 장치가 필요한 경우 정기 구독자에게 해당 기계나 장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소비자는 정기구독하는 물품에 대한 구독료만 지급하면 되며, 해당 구독료 외에 기계나 장치의 가격은 청구되지 않음
- 달러쉐이브클럽은 면도날 구독자에게 면도기를, 돌체구스토나 일리카페는 커피캡슐 구독자에게 커피머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정기구독이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장치는 정기구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기구독을 유도하는 것임

[그림 III-4] 사은품을 제공하는 정기배송 물품 사례



정기배송 혜택 알아보기

캡슐 할인

머신 증정

* 머신 증정은 비기너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무료 배송

커피&머신 정기구독

- 구독 시, 커피머신 무료 증정
- 최대 34% 할인 혜택
- 언제나, 무료배송

신청하기



자료: 달러셰이브클럽, <https://us.dollarshaveclub.com/>, 검색일자: 2024. 2. 14.; 돌체구스토, <https://www.dolce-gusto.co.kr/subscription-event>, 검색일자: 2024. 2. 14.; 일리카페, https://shop.illycaffee.co.kr/order/subscription_main.php, 검색일자: 2024. 2. 14.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거래가격³⁶⁾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함³⁷⁾
- 즉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해당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아도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됨³⁸⁾
 - 다만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³⁹⁾
- 따라서 해외배송되는 정기구독물품의 구독료는 동일 물품을 단품으로 구매하는 경우보다 할인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는 정기구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기배송 시마다 품목이 변경됨에 따라 물품의 가격과 구독료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됨
- 반면 정기구매 물품의 사은품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기계 등이 정기구매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살펴보아야 함
 -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 정기구독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구독료만을 공급자에게 지급함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정기구독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기계 등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한다면 수입자 또한 정기구독 물품에 대한 가격만을 공급자에게 지급함

36) 「관세법」 제30조 제1항

37) 「WTO 평가협정」 부속서 I.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38) 「WTO 평가협정」 권고의견 2.1

39) 「관세법」 제30조 제4항

-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되는바 기계 등과 같은 사은품은 판매된 물품이 아님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음⁴⁰⁾

- 따라서 기계 등의 사은품은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실제지급금액이 없으므로 후순위의 관세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
 - 차순위의 관세평가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계 등이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기계 등의 사은품의 무상지급이 정기구매 물품의 할인의 일종이며, 따라서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에 사은품의 가격도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일정한 수량이나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되며, 구독의 경우 정기적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할인을 사은품이라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정기구매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사은품의 경우 별도의 무상수입 물품으로 보아야 할지 그 가격이 정기배송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은품의 가격만큼 정기배송 물품의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본다면 사은품과 정기배송 물품의 품목분류가 다르므로 각 물품을 과세할 방법도 살펴보아야 함

40)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3.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물품

가. 구독 사례

- 구독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해당 물품 등을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점임
 - 구독은 구매뿐만 아니라 접근 권한을 허용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며, 소비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물품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변경주기가 긴 고가의 물품의 경우 대여 방식의 구독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구매보다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교적 자유롭게 품목을 교체할 수 있음
 - 대여 방식의 구독은 소비자가 구독기간 동안 품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함
 - 또는 구독의 신청·해지에 제한이 없어 기존의 구독을 해지하고 새로운 구독을 신청하여 품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업계가 대여 방식의 구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구독모델과 기존의 장기렌트나 리스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음
 - 구독은 심사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며, 약정기간이나 보증금이 없으며,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⁴¹⁾

- 볼보의 Care by Volvo라는 구독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월 1,250 마일의 주행거리를 부여하며, 5개월 후에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함⁴²⁾
 - 구독 중에 새로운 차종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독자는 5개월 후 구독을 취소하고 차량을 반납한 후 새로운 차량을 구독할 수 있음⁴³⁾

41) 박현길(2019), p. 35: 현대자동차,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longtermbenefit>, 검색일자: 2024. 2. 15.

42) 볼보, <https://www.volvocars.com/us/care-by-volvo/>, 검색일자: 2024. 2. 15.

43) 볼보, <https://www.volvocars.com/us/care-by-volvo/faq/>, 검색일자: 2024. 2. 15.

- 포르쉐는 구독기간 중 차종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다중구독과 하나의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단일구독을 모두 출시함⁴⁴⁾
- 다중구독은 구독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 없이 차종의 변경이 가능하며, 30일을 주기로 구독이 자동으로 갱신되고, 30일 전에 통지 시 구독취소가 가능함⁴⁵⁾
- 1개월 또는 3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선택한 차종을 대여할 수 있는 단일구독의 경우 약정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기간 갱신 시 차종을 변경할 수 있고, 30일 전 통지 시 구독취소가 가능함

[그림 III-5]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포르쉐)

Multi-Vehicle Subscription

Switch vehicles as often as you like throughout the month. When ultimate flexibility is desired, Multi-Vehicle Subscription is your program. Take the Taycan for a weekday commute. Book a Cayenne for a weekend getaway with the family. Switch and drive the 911 for special occasions. The choice is yours.

Benefits:

- \$3,600/month + tax¹
- 2,000 miles/month
- Insurance, roadside assistance, and vehicle maintenance included
- Concierge service
- Complimentary delivery and pick-up available for subscriptions within 20 miles of the participating authorized Porsche dealership



Single-Vehicle Subscription

Choose the Porsche of your dreams and drive it for an entire month. Extend your subscription monthly to continue driving it or change it up and try another model in the Porsche lineup.

Benefits:

- From \$1,700/month + tax¹ (pricing based on vehicle selection)
- 1,500 miles/month
- Insurance, roadside assistance, vehicle maintenance
- Concierge service
- Complimentary delivery and pick-up available for subscriptions within 20 miles of the participating authorized Porsche dealership

자료: 포르쉐, <https://www.porsche.com/usa/accessoriesandservices/porschedrive/subscription/>, 검색일자: 2024. 2. 15.

44) 포르쉐, <https://www.porsche.com/usa/accessoriesandservices/porschedrive/subscription/>, 검색일자: 2024. 2. 15.

45) 포르쉐, <https://www.porsche.com/usa/accessoriesandservices/porschedrive/faq/>, 검색일자: 2024. 2. 15.

- 현대자동차의 현대셀렉션은 주행거리 제한, 약정기간, 선납 보증금, 해지 위약금 없이 차량을 대여하며, 일부 상품은 차종의 변경이 가능함⁴⁶⁾
-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을 기준으로 상품 및 구독료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종의 교체 횟수, 사용자 가능 인원 등이 달라짐⁴⁷⁾

[그림 III-6]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사례(현대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요금 0원, 선납금/위약금 0원, 첫 달 이후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현대셀렉션 월구독(레귤러팩)을 이용해 보세요



월구독(레귤러팩) 상품별 가격 및 주요 혜택

상품	월 요금	차량 교체 가능	사용자 추가	스페셜팩 할인	지역간 구독로밍	주행거리	첫 달 이후 자유 해지	선납금/위약금
Entry	49만원	-	-	-	-	무제한	가능	없음
Basic	59만원	-	-	-	-			
Standard	79만원	월 1회	+1인	월 1회 50% 할인	· 내륙 타지역 스페셜팩 무료 이용권 월 1회 제공 · 제주 지역 스페셜팩 50% 할인권 월 1회 제공			
Premium	99만원	월 2회	+2인					
Premium Plus	109만원		+2인					
N	99만원	-	+3인	월 1회 무료				
EV	99만원	-	+3인	월 1회 50% 할인				
제주	*89/99만원	-	-	-				

자료: 현대자동차,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monthlysubs>, 검색일자: 2024. 2. 15.

46) 현대자동차,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hyundai-selection-information>, 검색일자: 2024. 2. 15.

47) 현대자동차,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monthlysubs>, 검색일자: 2024. 2. 15.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 관세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 판매는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함⁴⁸⁾

- 따라서 물품이 수출판매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수 없고 후순위의 관세평가방법이 적용됨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출판매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함

- 대여 방식의 구독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소비자는 물품의 가격이 아닌 구독료를 지급하며, 공급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므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음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며,⁴⁹⁾ 대여 방식의 구독은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대여 방식의 정기구독 물품의 구독료는 판매에 따른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금액이라 볼 수 없고, 후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해야 함
 - 후순위의 관세평가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구독 물품이 다른 수입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대여된 정기구독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기간이 판매물품보다 짧고, 물품이 공급자에게 반환되므로 판매물품과 동일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음

48)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49)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대여구독의 경우 약정기간이 없거나 짧아 해지가 비교적 자유롭고, 구독기간 동안 품목을 변경할 수도 있어 교체주기가 구매물품보다 짧음
- 특히 구독기간 동안 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첫 번째 정기구독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품목이 변경되면 과세물건이 달라지므로 수입통관절차의 이행과 관세 납부가 필요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대여된 정기구독 물품이 구독 종료 또는 품목 변경 시 해외공급자에게 반환된다면 관세를 경감하거나 환급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대여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거나 일부 환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된 가치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4.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가. 구독 사례

- 구독경제에서 접근권한 부여, 대여와 같은 소비방식은 물품 자체뿐 아니라 물품의 기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있음
 - 물품 구매 시 물품의 기능을 선택하여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⁵⁰⁾
- 이를 위해서는 구독하는 기능이 동작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이미 물품에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과 인프라 간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⁵¹⁾

50) 유승한, 「자동차 SW 구독의 시대 도래」, 『오토저널』, 제44권 제9호,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p. 28

51) 유승한(2022), p. 28

- 물품의 구매와 별도로 기능을 구독하기 위해 물품에 새로운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구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적이거나 고도화된 기능을 미리 사용해보거나 기능이 필요한 특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⁵²⁾
- 기존의 소유 개념의 구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소비 방식이 추가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음
-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대중성과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양산하지 못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구독 형태로 출시할 수 있음⁵³⁾
- 소비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화된 선택적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결국 소프트웨어 구독으로 더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이 출시되어 소비자는 더 높은 효용을 향유하고, 공급자는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음⁵⁴⁾
- 소프트웨어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독하므로 구매 저항이 없으며 구독을 통한 이용 경험으로 특정 기능의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능의 구독은 자동차 시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나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추가기능을 구독할 수 있음
- 자동차 시장의 소프트웨어 구독은 기능을 보다 확장 또는 고도화시키는 형태, 구독 기간 동안 편의기능을 사용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⁵⁵⁾
- 최근에는 구독의 대상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나 샤시 제어와 같이 차량 제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52) 유승한(2022), p. 29

53) 유승한(2022), p. 29

54) 유승한(2022), p. 29

55) 유승한(2022), p. 29

-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확장시키는 FSD(Full Self Driving) 기능과⁵⁶⁾ 차량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Connectivity 기능을 구독으로 제공함⁵⁷⁾
 - Connectivity는 음악 및 미디어 스트리밍,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드라이빙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BMW는 자율적 가속·제동기능을 제공하는 Driving Assistant Plus, 블랙박스 기능인 Safety Camera Information, 상향등 조정 기능인 High Beam Assistant 등을 구독으로 제공하고 있음⁵⁸⁾
 - 각 기능은 1~3개월간 시험판의 체험이 가능하며, 월 또는 년을 주기로 구독하거나 완전히 구매할 수 있음

56) 다만 테슬라 코리아는 FSD 기능은 구독이 아닌 추가 구매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음


57) 테슬라 코리아, https://www.tesla.com/ko_kr/support/connectivity#current-owner-impact, 검색일자: 2024. 2. 15.

58) BMW, <https://www.bmw.co.uk/en/shop/ls/cp/connected-drive>, 검색일자: 2024. 2. 15.

[그림 III-7]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BMW)

BMW CONNECTED DRIVE.

The BMW ConnectedDrive Store lets you equip your BMW with exclusive upgrades, extend your digital services, and more.







DIGITAL PACKAGES.

Discover our bundles and experience your vehicle with digital premium functions. Log in to find compatible bundles for your vehicle.

> Details

Login

<p>☆ BEST CHOICE</p>  <p>Driving Assistant Plus</p> <p>Your BMW accelerates and brakes independently. It maintains a distance from the...</p> <p>starting at € 55.00 / 1 month</p> <p style="text-align: center;"> 🛒 Details </p>	<p>FREE TRIAL</p>  <p>Safety Camera Information</p> <p>Safety Camera Information alerts you to fixed traffic enforcement cameras.</p> <p>starting at € 25.00 / 1 year</p> <p style="text-align: center;"> 🛒 Details </p>	<p>FREE TRIAL</p>  <p>Parking Assistant Professional</p> <p>Your BMW parks itself while you look on. This smart parking aid minimises the risk of damage ...</p> <p>starting at € 19.00 / 1 month</p> <p style="text-align: center;"> 🛒 Details </p>	<p>FREE TRIAL</p>  <p>High Beam Assistant</p> <p>You no longer need to switch between low and high beam. Your BMW automatically does...</p> <p>starting at € 10.00 / 1 month</p> <p style="text-align: center;"> 🛒 Details </p>
--	---	---	---

< BMW CONNECTED DRIVE



DRIVING ASSISTANT PLUS

Your BMW accelerates and brakes independently. It maintains a distance from the vehicle in front and relieves you of stress, especially on long journeys.

Free Trial

3 months trial

Durations

1 month

1 year

3 years

Unlimited^[1]

starting at € 55.00 [Ⓞ]
(incl. VAT)

자료: BMW, <https://www.bmw.co.uk/en/shop/ls/cp/connected-drive>, 검색일자: 2024. 2. 15.;
BMW, https://www.bmw.co.uk/en/shop/ls/dp/DrivingAssistant_Plus_SFA_gb, 검색일자: 2024. 2. 15.

[그림 III-8] 일부 기능을 구독으로 사용하는 정기구독 물품 사례(벤츠)

Performance boost at a glance

Model	Output Increase	Acceleration Change (from 0 to 60 mph)	Pricing
EQE 350 4MATIC Sedan	From 288 hp to 348 hp (+60 hp)	From 6.0 s to 5.1 s (-0.9 s)	Monthly: \$60/month Yearly: \$600/year Lifetime of Vehicle: \$1,950
EQE 350 4MATIC SUV	From 288 hp to 348 hp (+60 hp)	From 6.2 s to 5.2 s (-1.0 s)	Monthly: \$60/month Yearly: \$600/year Lifetime of Vehicle: \$1,950
EQS 450 4MATIC Sedan	From 355 hp to 435 hp (+80 hp)	From 5.3 s to 4.5 s (-0.8 s)	Monthly: \$90/month Yearly: \$900/year Lifetime of Vehicle: \$2,950
EQS 450 4MATIC SUV	From 355 hp to 435 hp (+80 hp)	From 5.8 s to 4.9 s (-0.9 s)	Monthly: \$90/month Yearly: \$900/year Lifetime of Vehicle: \$2,950


Acceleration Increase
Digital Extra

Accelerate more powerfully: Increase the torque and maximum output of your Mercedes-EQ.

Free trial month with your first order


Add to basket

Login




디지털 라디오
당신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디지털 라디오를 이용하여 최상의 사운드를 만끽하고, 평소 즐겨 듣는 모든 방송국의 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Mercedes me Store로 이동




스마트폰 연동
모든 작업을 평소처럼 수행하고 미디어 디스플레이에서 개인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Mercedes me Store로 이동



내비게이션
최신 세대의 내비게이션과 3D 지도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편안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Mercedes me Store로 이동



리어 액셀 스티어링 (최대 10°)
회전 반경이 더 작아서 당신의 메르세데스-벤츠를 쉽게 주차하고 조향할 수 있습니다.

Mercedes me Store로 이동

자료: 메르세데스 벤츠, <https://shop.mbusa.com/en-us/connect/pdp/acceleration-increase/709>, 검색일자: 2024. 2. 15.;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services/mercedes-me/digital-extras.html#additional-digital-extras>, 검색일자: 2024. 2. 15.

나. 관세 과세 시 쟁점사항

-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함⁵⁹⁾
 - 즉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세이며, 물품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수입신고되는 때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됨

- 따라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은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를 정한 「HS 협약」에서도 품목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등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국가 간 전송될 수 있으며, 이러

59) 「관세법」 제14조 내지 제15조

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관세평가의 대상이 아님

- 물품의 기능을 정기구독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무선통신매체 등을 통해 전송받으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물품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개선하는 소프트웨어는 OTA(Over The Air)⁶⁰⁾와 같은 기술을 통해 업그레이드됨

-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장치가 수입신고 시 물품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구독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물품의 물리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성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해당 기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해당 기능을 구매한 후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기능의 가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이후 활성화된 기능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구독의 대상이 되는 기능은 구독이 아닌 판매를 통해 공급되기도 하며, 판매와 다름 없이 물품의 수명주기, 즉 무한의 기간을 주기로 구독하는 형태도 있음
 - 이러한 형태로 기능을 구비한 후 수입되는 경우 해당 기능의 구매가격이나 무기한 사용에 대한 구독료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물품 기능의 구독이 관세의 과세대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이를 과세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지 또한 살펴보아야 함
 - 기능의 사용대가인 구독료는 판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가격이 될 수 없고,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 기능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면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60)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 등록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네이버 IT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5028&cid=42346&categoryId=42346>, 검색일자: 2024. 2. 16.)

IV.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1. 정기구매 물품의 소액면세

- 우리나라는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액의 정기구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독료가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물품이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과세 시 반복되는 수입건은 고려되지 않고 각 회에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됨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해외직구의 확대에 따라 소액면세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EU는 관세동맹 개혁을 통해 소액면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소액면세를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를 설정하였음
- 더 이상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경제적 가치나 규모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며, 정기구독을 통한 수입이 활성화된다면 소액물품 수입 규모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적인 측면이나 국내산업 보호 측면에서의 소액면세 제도의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음
- 따라서 정기구매 물품과 같이 반복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제한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복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반복 수입되는 물품을 단일의 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가. 소액면세 규정

1) 우리나라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함⁶¹⁾
 - 자가사용 물품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와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음
-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소액면세가 적용되지 않음⁶²⁾
 - 관세청장은 소액면세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을 산정하는 때에 합산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분할되어 수입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있음⁶³⁾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액면세를 통해 명백하게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합산과세하며, 반복 수입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 「관세청 시행규칙」에서는 반복 수입되는 물품도 소액면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61) 「관세법」 제94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6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6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2) 미국

- 미국은 1인이 1일에 수입한 물품의 합계가 수출국의 공정가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제세를 면제함⁶⁴⁾
 - 관세 및 제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외국에 있는 자가 미국에 있는 자에게 보내는 선의의 선물의 경우 100달러(버진군도, 괌, 아메리칸 사모아에 있는 자가 보내는 것은 200달러)
 - 미국에 도착한 자가 소지한 개인 또는 가정물품으로 제9804.00.03호(비거주자의 선물), 제9804.00.65호 또는 제9804.00.70호(거주자의 단기간 여행 취득물품)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은 200달러
 - 기타의 경우 800달러

- 다만 단일의 주문 또는 계약과 관련된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하여 발송된 경우 소액면세는 적용되지 않음⁶⁵⁾
 - 단일 주문 또는 계약의 생산단위들 중 하나인 선적물품이 면세를 받거나 관련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 송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면세하지 않음⁶⁶⁾

3) EU

- EU는 제3국에서 EU의 수하인에게 직접 발송되는 탁송품으로서 총 가격이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함⁶⁷⁾
 - 다만 알코올성 제품, 향수 및 화장수, 담배 및 담배제품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⁶⁸⁾

- 그러나 EU는 2023년 5월 17일에 발표된 관세동맹 개혁안에 관세면제 규정 Council

64) 19 U.S.C. 제1321조

65) 19 U.S.C. 제1321조

66) 19 CFR 제10.151조

67) Council Regulation(EC) No 1186/2009 제23조

68) Council Regulation(EC) No 1186/2009 제24조

Regulation(EC) No 1186/2009의 소액면세 규정 폐지를 포함시킴⁶⁹⁾

- 이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소액면세 적용으로 인한 세수의 유출, 관련 EU 내 전통무역 및 소매업체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⁷⁰⁾

- 또한 150유로 이하의 원거리 판매물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도록 관세율표 Regulation(EEC) No 2658/87에 간이세율표를 추가함⁷¹⁾
 - 원거리 판매물품이란 제3영역 또는 제3국에서 공급자에 의해 또는 공급자를 대리하여 회원국의 고객에게 발송 또는 운송되는 물품의 공급을 말함⁷²⁾

- 간이세율표는 집합시스템(Bucketing system)에 따라 물품을 5개의 집합으로 분류하여 적용될 관세율을 명시하고 있으며,⁷³⁾ 최저 0%, 최고 17%의 세율이 적용됨⁷⁴⁾
 - 간이세율의 적용 여부는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세율이나 원산지증명을 통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8년 3월 1일 이후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의 원거리 판매물품은 소액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간이세율 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⁷⁵⁾
 - 이를 통해 EU는 관세 감면을 통한 부당이익을 위해 물품을 평가절하하거나 인위적으로 탁송품을 분할하는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⁷⁶⁾

69)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4. 2. 19.

70)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71)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72) Directive 2006/112/EC 제14조 제4항 제2호

73)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Whereas

74) 구체적인 물품별 세율은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EEC) No 1186/2009 ANNEX I 참조

75)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제3조

76)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Explanatory Memorandum

4) 중국

- 중국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및 한도를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과 해외직배송 수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⁷⁷⁾
 -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규제개선 관련 업무통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직구 형태의 수입을 말함
 - 해외 직배송 수입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외직구임

-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중국 내 소비자가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말함⁷⁸⁾
 - 물품을 온라인 구매 보세수입 또는 직구매 수입이라는 세관 관리코드를 통해 수입해야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목록」에 포함된 물품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조세정책」에 따른 거래한도 내의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어야 함
 - 해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는 경우 거래, 지불, 물류의 전자정보를 3단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해관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물류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 결제업체의 의뢰를 받아 법적 책임을 지고 해관에 거래, 지불 등의 전자정보를 전송할 것을 약속해야 함

- 특히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은 거래한도 내의 물품에 한하며,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무역 방식에 따라 관리함⁷⁹⁾
 - 거래한도 내의 물품만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으로 인정하며,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물품으로 취급함

77) 이홍숙,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한국무역상무연구학회, 2020, p. 194

78)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규제개선 관련 업무통지」 제1조

79)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2조

-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의 기준이 되는 거래한도는 1회 5,000위안, 연간 26,000 위안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의 관세율은 잠정적으로 0%를 적용함⁸⁰⁾
 - 과세가격이 5,000위안을 초과했지만 26,000위안의 연간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한 건의 물품 주문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대한 통관절차가 적용됨⁸¹⁾
 - 다만 물품에 대한 관세율 전액은 부과되며, 거래금액은 연간 거래한도액에 합산됨

- 한편 해외직배송 수입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⁸²⁾
 - 즉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주체가 참여하는 거래를 말함

- 해외직배송 물품의 개인 1회 거래한도는 홍콩·마카오·대만의 경우 800위안, 기타 국가 및 지역은 1,000위안임⁸³⁾
 -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우편물품은 화물규정에 따라 반송이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⁸⁴⁾
 - 다만 우편소포에 1개의 품목만 있고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초과하였어도 해관심사 후 개인용으로 확인된다면 개인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음

- 해외직배송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징수하며, 그 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조정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름
 - 3개의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13%, 20%, 50%의 세율이 적용되며,⁸⁵⁾ 납부세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 수입세는 면제됨⁸⁶⁾

80)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1조
 81)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물품 조세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2조
 82) 이홍숙(2020), p. 193
 83) 「입출국 개인우편물품 관리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 제2조
 84) 「입출국 개인우편물품 관리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85) 구체적인 물품별 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조정문제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율표 참조
 86) 「입출국 개인우편물품 관리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조

나. 반복 수입되는 소액면세 제한의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정기구매 물품은 각 수입되는 물품의 구독료가 150달러 이하라면 구독 횟수나 주기와 상관없이 소액면세될 수 있음
 - 구독료가 1회에 정기구매되는 물품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구독료가 과세가격으로서 소액면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다만 구독료가 2회 이상의 배송에 대한 것인 경우 구독료를 각 배송에 대해 안분하여 소액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반면 EU와 중국의 경우 정기구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EU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중국은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에 대해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거나 그 외의 해외직배송 물품은 관세와 증치세 등을 포함한 세율을 적용함

- EU와 중국이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관세당국이 확보·사용할 수 있는 통관환경을 마련했기 때문임
 - EU는 2021년 전자상거래 물품, 즉 우편 및 항공특송 물품의 정보를 수입통제시스템(Import Control System 2)을 통해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음⁸⁷⁾
 - 중국은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을 해관이 주문, 지불, 운송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 이는 소액물품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세수에 비해 그 행정비용이 과다하다는 면세의 취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87)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2_en, 검색일자: 2024. 2. 19.

-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은 모든 수입물품의 통관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당국은 큰 행정비용의 지출 없이 소액물품을 관리할 수 있음
- 소액물품의 과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EU는 소액물품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경우 향후 15년간 약 130억유로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⁸⁸⁾
- 또한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면세규정을 악용한 탈세나 국내업체와의 과세형평성의 문제도 두드러지기 시작함
 - 2016년 코펜하겐 이코노믹스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EU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탁송품의 65%가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으로 추정됨⁸⁹⁾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을 폐지하거나 면세한도를 설정하여 반복 수입되는 정기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를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세수의 확대, 국내업체와의 공평한 시장 조성, 탈세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소액면세 적용 제외 단서조항에 반복되어 수입되는 물품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중국과 유사하게 소비자가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합산 가격의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설정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관련 제도나 기반 설비 및 시스템 마련 또한 선행되어야 함

88)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Explanatory Memorandum

89)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EEC) No 2658/87 and Regulation (EC) No 1186/2009 Explanatory Memorandum

2. 사은품이 제공되는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할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인하한 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가격할인은 그 합의가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내에 반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가격의 조정 또는 변경의 문제임⁹⁰⁾

- 가격할인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것이라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격할인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음⁹¹⁾
 - 대표적으로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이 인정됨

- 정기구매 물품의 경우 공급자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계나 장치를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도 함
 - 정기구매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등을 사은품으로 공급하여 정기구매 물품의 구독을 유도하는 것임

- 이 경우 정기구매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계 등의 가격만큼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또한 정기구매 물품의 할인이 인정된다면 기계 등의 사은품과 정기구매 물품에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할지 등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90) 김기인(2007), p. 309

91) 김기인(2007), pp. 308~309

가. 할인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례

1)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고정된 가격표에 따라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판매수량에 기초하여 무료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할인을 인정함⁹²⁾
 - 물품 주문 건에 대해 합의한 개수 또는 비율만큼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동시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주문 건에 대한 가격을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의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단가를 인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반면 같은 사례에서 우리나라는 무상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무상물품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⁹³⁾
 - 무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할인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평가 목적상 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표 Ⅳ-1〉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1(우리나라)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협작성 관상동맥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격은 매년 새롭게 약정함 - 관련 가격표에는 품목별 판매가격과 함께 일정 수량을 구매하면 같은 물품을 추가로 무상제공(일반 FOC 물품)하고, 이와 별도로 연간 누적하여 목표 수량을 구매하면 같은 물품을 추가로 무상제공(계약 FOC 물품)하는 기준 및 무상제공 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92) 조심 2020관0005, 2020. 12. 14.

93) 조심 2020관0005, 2020. 12. 14.

〈표 IV-1〉의 계속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FOC 물품과 계약 FOC 기준 충족을 전제로 안분한 계약 FOC 물품의 일부를 함께 제공하였고, 수입자는 처분청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모두 구매계약의 가격표상 거래가격으로 신고함 - 수입자는 5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수입신고분에 대해 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는 사실상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일반 FOC 물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함 - 이후 수입자는 처분청에 일반 FOC 물품과 마찬가지로 계약 FOC 물품의 경우도 수출자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FOC의 수량은 수량할인반아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실제지급금액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자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그에 연동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일상적인 상관행임 - 이때 계약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100개를 사면 10개를 무상으로 준다거나 110개를 사면 100개의 가격으로 준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110개를 100개의 가격으로 매매한다는 약정임 - 따라서 20,660개를 사면 6,340개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표현과 25,000개를 사더라도 20,660개의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같은 내용을 함의한 것으로 수입자가 구매한 25,000개의 단가는 지불한 총대금/25,000개로 계산되어야 할 것임 - 처분청이 수량할인으로 인정한 일반 FOC는 3개 구매라는 조건성취에 따라 1개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량할인은 수량구매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성취되거나 성취될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생됨 - 계약 FOC도 이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특정수량을 구입하여야 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특정수량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실제 거래도 계약 FOC의 수량으로 이루어졌음 -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발행한 다수의 주문과 수출자의 관련 송장은 각각 독립된 개별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가격산출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 반복되는 하나의 동일거래에 대한 분할거래에 해당함 - 처분청은 추가로 제공된 계약 FOC 수량이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계약 FOC 물품은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물품임 - 수출자가 수량에 근거하여 제시한 가격표에 판매기본단가, 일반 FOC 가격, 계약 FOC 가격이 존재하고 수입자는 이들 가격을 지급하고 계약 FOC 물품을 공급받은 것임 - 수입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계약 FOC 적용단가로 매년 약정된 수량대로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청한 계약 FOC 수량을 약정대로 제공한 것임 - 약정수량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수출 판매계약은 이미 물품을 수출하기 이전부터 당사자 간에 확정되어 있음 • 처분청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와 수출자는 연간 계약 FOC 기준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면 그에 해당하는 계약 FOC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출자는 계약 FOC 기준 충족 이전부터 개별 물품 거래 시마

〈표 Ⅳ-1〉의 계속

사례 상세
<p>다 계약 FOC 물품을 안분하여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와 수출자가 협의 등을 통해 계약 FOC 기준 충족을 전제로 미리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계약 FOC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서 제외되는 무상물품이 분명한 - 구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격표는 계약 FOC 기준 수량 이상을 구매하면 해당 계약 FOC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약정 내용이 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유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 FOC의 경우 물품 수입 시 이미 일반 FOC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수출자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 계약 FOC 물품의 경우 계약 FOC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이를 미리 제공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계약 FOC 물품은 연간 구매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건 성취를 전제로 계약 FOC 물품을 매 주문별로 분할하여 제공받는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의 회외적 거래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무상제공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음 - 또한 수입시점에 개별 물품별로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관세평가 체계상 계약 FOC 물품의 제공은 계약 FOC 기준 충족 이전 수입된 유상물품에 대한 거래조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후에 결정되는 계약 FOC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이전 수입된 물품 전체에 대해 수량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15.1을 통해 수량할인은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와 관련하여 수량할인을 크게 물품 수입 이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와 수입 이후에 할인이 결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예시를 통해 수입 이후에 소급하여 할인이 인정된 금액은 할인과 관련 없는 선적분과 할인이 결정되기 전에 수입된 선적분에 대한 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함 - 따라서 ①물품별 고정가격표가 존재하고, ②판매자가 해당 고정가격표를 기초로 판매된 수량에 따라 자신의 물품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③수량에 따른 할인금액은 기준연도 동안 구매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어야 하고, ④대상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될 때 내지 적어도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할인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관세평가 목적상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런데 계약 FOC 물품의 경우 품목별 고정가격표가 존재하기는 하나 수출자는 계약 FOC 기준 수량을 구매할 경우 물품을 추가로 제공할 뿐 판매된 수량에 따라 쟁점물품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매수량에 따라 수입자에게 물품가격에서 공제하고 있지 않음 - 즉 계약 FOC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가격표에 기재된 무상물품의 제공여부만 달라질 뿐 물품 수입 시 결정된 수입자의 실제지급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수량할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p>• 근거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가 청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하기와 같이 결정함 - 일반 FOC의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고정된 가격표에 따라 해당 물품을 거래할 때마다 판매수량에 기초하여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매 기본단기물품 주문 건에 대해 합의한 FOC의 개수 또는 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V-1〉의 계속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기본단가물품과 FOC 물품이 동시에 주문되고 하나의 송품장으로 작성되는 등 거래관행상 하나의 동일거래로 취급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일반 FOC 물품은 기본단가물품과 동일 주문에 의하여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회신함 - 반면 계약 FOC의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 달성을 전제로 매회 기본단가물품 주문 시 미리 계약 FOC 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나 정산 시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는 경우, 목표량을 초과하는 경우, 목표량에 부족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애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함 - 계약 FOC 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수량에 기초하여 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조건이 충족되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추가로 무상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 수입자가 수출자와 합의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정하고 연간 목표량을 매회 분할하여 주문 및 구매하면서 미리 계약 FOC 물품을 분할 제공받는다 고 하여 무상제공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연간 구매목표 달성에 따라 추가로 제공받는 계약 FOC 물품은 기본조건에 달성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회신함 -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매계약에는 품목별 기본단가, 일반 FOC 제공기준, 연간 구매목표 달성 시 계약 FOC 제공 등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구매의사는 물론 확정가격이나 확정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자체를 해당 연도의 각 수입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수입자가 구매계약에 따라 각 주문 시 유상물품, 일반 FOC 물품, 계약 FOC 물품을 구분하여 함께 주문하고, 이후 수출자가 이를 승낙하는 거래구조를 고려하면 이때 각 개별 거래가 독립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임 - 수출자가 계약 FOC 수량을 미리 제공하는 것은 연간 구매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수출자가 업무상 효율을 위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호의적 거래행위로 보임 - 계약 FOC가 결과적으로 수입물품의 단가를 인하한다는 점에서 수량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 개별 거래에서 미리 제공되는 계약 FOC 수량은 WCO 권고의견 15.1에서 예시하고 있는 누적 할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설명 연간 구매목표를 달성하여 계약 FOC 수량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는 소급하여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모두 할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p>•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는 무상으로 추가 제공된 계약 FOC 물품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계약 FOC 물품을 별도의 무상수입물품으로 보아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수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료: 조심 2020관0005, 2020. 12. 14.

□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수량을 무료로 공급받기로 한 특약에 따라 제공받은 무상물품을 할인으로 인정함⁹⁴⁾

94) 대법원 2022. 11. 17. 선고2018두47714 판결

- 해당 계약을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으로 보아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표 Ⅳ-2〉 할인을 현물로 제공한 사례 2(우리나라)

사례 상세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는 일본 법인인 수출자와 의약품 원료인 SKSD를 단위당 1,187,500원에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에서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특약함 - 수입자는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3차례에 걸쳐 특약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SKSD에 대하여 단위당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함 - 세관은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함 - 또한 구매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자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함 - 원심은 수입자가 무료샘플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p>•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은 구매수량이 연간 1,688 단위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 그리고 수입자가 특약에 따라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약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음 -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된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무료샘플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p>•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가격이 아닌 후순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자료: 대법원 2022. 11. 17. 선고2018두47714 판결

2) EU

- EU의 관세법위원회와 관세법 전문가 그룹은 관세평가 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특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관세평가개요서로 발간함⁹⁵⁾
 - 이는 관세평가 규정이 EU 전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 관세평가개요서는 가격할인은 특정고객에게 특정상황에서 특정시기에 물품의 정가를 경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가격할인에 대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⁹⁶⁾
 - 수량할인, 조기결제 할인, 추가선적물품 할인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가격할인의 관세평가상 취급방법에 대해 설명함

- 관세평가를 위한 할인은 수입물품과 관련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시점에 유효한 계약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⁹⁷⁾
 - 평가 목적으로 할인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음
 - 구매자가 할인을 이용할 수 있고,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지급되었으며, 적용된 할인은 송장가격에 반영되어 있음
 - 구매자가 할인을 이용할 수 있고, 할인이 반영된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음
 - 수입신고 시에 할인이 아직 제안되지 않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나 판매자가 할인을 소급 제안함
 - 할인이 표준 산업관행인지 다른 구매자에게도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음

- 할인이 수입신고 시에 이미 지급했거나 해야 할 가격에 표시된 경우 해당 가격은 과세

95) 강동익·이재선,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 155. (EU DG TAXUD,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2, p. 2에서 재인용)

96) 강동익·이재선(2022), p. 176. (EU DG TAXUD(2022), p. 44에서 재인용)

97) 강동익·이재선(2022), p. 176. (EU DG TAXUD(2022), pp. 44~45에서 재인용)

가격의 결정요소임⁹⁸⁾

- 판매계약에 명시된 이유 또는 범위로 수입신고 시에 이미 할인이 적용되고,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당국에 제공한 서류에 명시되었다면 할인은 인정됨
 - 물품에 대한 송장에 이미 할인이 계산되어야 하는 점은 필수가 아니며, 수입신고 시 계약상의 청구가 있었다면 금액 지급 후 실제가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됨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과 최종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할인은 허용됨⁹⁹⁾
- 이 경우 할인 금액이 수입신고 시에 결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인정됨
-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지급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므로 할인이 소급조정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¹⁰⁰⁾
- 연말에 가격을 소급하여 할인하는 등 관세평가일 이후에 가격의 경감이 발생한다면, 즉 처음부터 할인에 대한 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래가격에서 고려되지 않음
- 계약수량 외에 추가로 공급하는 물품이 무료인 경우 실제지급금액은 총수입물량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료물품을 별도로 평가해서는 안 됨¹⁰¹⁾
- 주문수량에 대한 여분으로 분실·손상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수량을 대금지급 물품과 함께 선적한 경우 여분의 가격은 이미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 또한 판매자가 고객에게 상업적 할인으로 고객이 주문한 유료물품의 수량에 더하여 동일한 물품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가격할인이나 경감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한 회사가 2,000 화폐단위의 텔레비전을 100대 수입하는 때에 충성도에 대한 감사로 10대의 텔레비전을 동일한 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

98) 강동익·이재선(2022), pp. 176~177, (EU DG TAXUD(2022), pp. 44~45에서 재인용)

99) 강동익·이재선(2022), p. 177, (EU DG TAXUD(2022), pp. 44~45에서 재인용)

100) 강동익·이재선(2022), p. 177, (EU DG TAXUD(2022), pp. 44~45에서 재인용)

101) 강동익·이재선(2022), p. 178, (EU DG TAXUD(2022), p. 47에서 재인용)

- 반면 주문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이 무료로 공급될 수도 있음¹⁰²⁾
 - 무료로 공급되는 물품이 수입자의 마케팅을 위한 시용품으로 사용되며, 해당 물품은 물리적 특징, 품질 및 평판이 주문물품과 동일함
 - 4,000개의 향수병에 추가하여 동일한 향수병 1,000개가 시용품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수입될 수 있음
 - 또한 주문물품과 유사한 무료견본이 동일하거나 더 작게 포장되어 주문물품과 함께 선적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이 견본이나 시용품인 경우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간주됨¹⁰³⁾
 - 이 경우 견본이 공급품에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판매계약, 송장 또는 기타 서류에 나타나야 함
 - 세관은 판매물품과 견본의 비율은 무시함
 - 하나의 선적에 견본이 15%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견본의 가격이 판매물품보다 비쌀 수도 있음

나. 정기구매 물품에 대한 할인 인정 여부 검토

- 우리나라와 EU 모두 가격할인이 물품의 무상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신고 시 해당 사실이 확정되어 있다면 할인을 인정하고 있음
 - 반면 수입신고 시에 할인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해당 할인이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는 누적수량에 따라 무상물품이 제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무상공급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무상공급이 확정된

102) 강동익·이재선(2022), p. 179, (EU DG TAXUD(2022), p. 47에서 재인용)

103) 강동익·이재선(2022), p. 179, (EU DG TAXUD(2022), p. 47에서 재인용)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따라서 누적수량에 따라 제공되는 무상물품 또한 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무상물품을 포함한 수량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 정기구매 물품에 대해 기계 등의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및 EU가 무상제공 물품을 가격할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공통점이 있음
 -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무상으로 물품을 추가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가격표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음
 - 또한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의 공급이 확정된 상태임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정기구매 물품에 대한 할인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다음의 차이점도 고려하여 가격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정기구매 물품에 대해 기계 등의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구매수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구매에 따른 것임
 - 정기구매에 따른 무상제공은 관세평가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 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정기적으로 수입될 물품과도 관련이 있음
 - 사례에서는 유상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동일하지만 정기구매 물품에 대해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은 정기구매 물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계 등임

- 먼저 정기구매, 즉 구독에 따른 할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거래가격 적용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¹⁰⁴⁾
 - 정기구독에 따른 사은품의 증정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님
 - 소비자가 정기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더라도 그 이익을 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므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또한 없음

104)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102

- 소비자는 정기구매한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양도·폐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을 받지도 않음¹⁰⁵⁾
 - 마지막으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이 있는지 여부도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이 사은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한편 정기구매에 따른 사은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받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볼 여지는 없음
- 다음으로 무상물품의 제공이 함께 수입되는 정기구독 물품뿐 아니라 추후 정기구독으로 수입되는 물품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함
- 정기구매 물품의 사용을 위한 기계 등은 해당 수입 건의 정기구매 물품뿐 아니라 향후 소비자가 구독할 정기구매 물품을 조건으로 공급자가 무상제공하는 것임
- WCO의 수량할인에 관한 권고의견 15.1에 따르면 할인은 수입국으로 수출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과 관련이 있음
-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할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누적 구매 등으로 할인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 건의 거래가격에 할인은 고려되지 않음
- 다만 정기구매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사은품이라는 할인이 이미 확정되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누적구매에 따른 수량할인의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음
- 할인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이전의 수입 건은 수입신고 시 가격에 할인을 반영할 수 없지만, 할인이 확정된 경우는 그 이후 수입신고 시 할인을 반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은품 등의 무상제공에 따른 할인을 이와 관련된 모든 수입 건에 적절하게 안분할 수 있다면 장래에 수입될 물품에 대한 할인도 인정될 여지가 있음

105) 다만 소비자가 정기구매 물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수입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는 무상제공되는 사은품을 정기구매 물품 판매에 포함해야 하고, 정기구매 물품 또한 정기구독의 형태로만 판매해야 하므로 처분 및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 정기구매로 향후 수입될 물품의 총량을 예상할 수 있다면 해당 수량에 대해 가격할인을 안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때 정기구매로 수입될 물품의 총량을 예상할 수 없다면 정기구매 물품의 최초 수입 시 가격할인을 모두 배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급자가 정기구독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면 이는 당사자 간 합의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물품의 제공을 할인으로 볼 수 있을지도 살펴보아야 함
- 우리나라의 사례나 EU의 개요서에서는 유상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판단 및 설명하고 있음
- 특정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 중 하나인 수량할인의 경우 인정요건으로 고정가격표 여부, 수량에 따른 가격책정의 증명, 수입 시 조건의 충족 등을 들고 있음
- 즉 할인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무상물품의 종류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정기구매에 따른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그 구독료가 정해져 있으며, 구독거래가 성립되는 때에 사은품의 제공도 확정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다만 구독에 선납금이나 해지 위약금 등의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만을 가정하며, 이러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거래가격 인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사은품의 제공을 정기구독 물품에 대한 할인의 일종으로 본다면 사은품의 가격을 정기구독 물품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정기구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함
- 즉 소비자가 지급하는 구독료에서 사은품의 가격을 공제해야 정기구독 물품의 할인된 가격을 과세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지급하는 구독료는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과 사은품의 가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은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같은 물품인 경우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을 제공된 물품의 총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산출할 수 있음

- 반면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다른 물품인 경우 단순히 가격과 수량으로 각 물품의 단가를 구할 수 없으며,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의 가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함
- 즉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내용 만으로는 사은품의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사은품의 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닌 후순위 관세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공급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가격 등을 기초로 정기구매 물품에 추가로 제공되는 사은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은품의 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될 수 없고, 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을 공제한 정기구매 물품의 가격은 정기구매 물품의 거래가격이라 볼 수 없음
 - 가격할인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기 위함이며, 당사자 간 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을 근거로 산출된 가격을 합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기구독에 따른 사은품은 무상으로 제공된 물품으로서 관세 목적상 정기구독 물품과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사은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닌 무상제공 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함
- 다만 소비자가 정기구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증정되는 사은품의 가격을 별도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함
 - 특히 정기구매 물품은 소액물품에 해당하지만 사은품의 가격과의 합계가 소액물품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한 인지 없이 소비자가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액면세를 적용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기준이 되며,¹⁰⁶⁾ 거래

106)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가격이 아닌 방법으로 결정된 사은품의 가격도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3. 대여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 정기구독은 구매뿐 아니라 대여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특히 고가의 물품의 경우 대여의 방식의 정기구독이 활용되고 있음
 - 소비자는 정기구독으로 가격의 부담 없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품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정기구독 물품이 대여방식으로 수입되는 경우 이를 수출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가 과세됨
 - 즉 정기구독 물품의 구독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물품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된 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소비자는 정기구독 물품의 총 내재가치에 대해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의 구독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연한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소비자는 정기구독 물품의 실제 사용기간인 구독기간이 사용연한보다 짧더라도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더욱이 정기구독 물품의 품목을 구독기간 동안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때마다 해당 물품의 내재가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구독기간 동안 정기구독 물품의 내재가치 만큼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품목을 변경할 때마다 총 내재가치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이와 같이 대여방식의 구독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정기구독 물품을 사용한 가치보다 관세가 부과된 가치가 큰 경우 이러한 관세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음
 - 대여방식의 구독은 해지나 품목의 변경에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짧아 실제 구독물품의 내재가치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

-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정기구독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감세 또는 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기구독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가치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거나 환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가. 재수출 감세 또는 환급 규정

1)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재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함¹⁰⁷⁾
 -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야 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함¹⁰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107) 「관세법」 제98조

108)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

- 한편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을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¹⁰⁹⁾
- 물품이 수출된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¹¹⁰⁾

2) 미국

- 미국은 특정 물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되어 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¹⁾
- 해당 물품은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의 1년과 합계하여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¹¹²⁾
 - 수리, 대체 또는 가공을 위한 물품
 - 제조자에 의하여 수입되는 여성의류용 모형
 - 삽화가 또는 사진사가 카탈로그, 팸플릿, 광고물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상품의 주문을 위한 견본
 - 재생산을 위한 검사용 물품, 이러한 검사 및 재생산을 위한 물품, 영화 광고 필름
 - 시험,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한 물품
 - 경기 및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비행기, 비행선, 기구, 보트, 레이싱 셸 및 이와 유사한 탈 것, 이들의 장비
 - 장애물 제거, 진화, 긴급수리 등을 위한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장비
 - 압축가스 용기, 운송 중 내용물을 보호하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
 -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장비, 도구 및 이들의 수리용 장비

10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호

1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 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111) HTSUS(2022) 제98류 제13절 주 1

112) HTSUS(2022) 제98류 제9013호

및 도구, 캠핑장비

- 수출하기 위한 제조품 또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물품
- 사육, 전시회, 대회를 위한 동물 및 가금류, 이들을 위한 장비
- 전시용 또는 예술, 과학,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예술가, 작가, 과학자가 수입하는 순수미술작품, 조각, 사진, 철학적 또는 과학적 장치
- 전시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 새시, 자동차 몸체, 이들의 단면을 자른 것과 부분품

□ 또한 수입통관의 미완료, 정산 또는 정산 없이 소비를 위한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의 감독하에 있는 물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관세를 환불(refund)함¹¹³⁾

- 관련 법에서 명백하게 환급(drawback)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세관 감독하에서 반출된 후 수출되는 물품은 관세를 환불할 수 없음

□ 한편 미국은 수입 시 관세 등이 부과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 후 3년 내에 수출된 경우 납부된 관세 등의 99%를 환급함¹¹⁴⁾

- 수입물품에 특정 작업, 작업들, 복합적인 작업이 수행된 경우 해당 작업이 제조품 환급에서 규정한 제조 또는 생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으로 보지 않음¹¹⁵⁾
 - 제조 또는 생산이란 물품의 고유한 이름, 성질, 용도를 새롭거나 다르게 만드는 과정이나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함¹¹⁶⁾

□ 이뿐만 아니라 수입 시 관세 등이 부과된 물품과 상업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물품의 수입 후 3년 내에 수출된 경우 납부된 관세 등의 99%를 환급함¹¹⁷⁾

- 이 경우 대체물품을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수입물품, 대체물품 또

113) 19 CFR 제158.45조

114) 19 U.S.C. 제1313조 제1항 제1호

115) 19 CFR 제191.31조

116) 19 CFR 제191.2조

117) 19 U.S.C. 제1313조 제1항 제1호

는 이 둘의 결합물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양도증명서를 수입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수취한 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상업적인 호환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산업표준, 부품번호, 품목번호, 관세평가가격 등을 이용하여 물품의 특성을 평가하여야 함¹¹⁸⁾
- 환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출예정일 최소 2 영업일 전에 세관에 공지하여야 함¹¹⁹⁾
 - 해당 공지는 물품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선하증권 번호, 물품의 소재지, 연락 가능한 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세관은 공지를 받은 후 2 영업일 이내에 수출물품에 대하여 검사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 실시 답변을 받은 당사자는 신속하게 수출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함
 - 수출물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환급은 거절되며, 세관이 검사 미실시 답변을 하거나,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음
 - 검사는 물품이 제시된 후 5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물품을 수출할 수 있음

3) EU

- EU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EU 물품을 수입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하여 일시 반입절차하에 둘 수 있도록 함¹²⁰⁾
 - 일시 반입물품은 수입관세뿐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 비용, 통상정책상의 조치도 적용받지 않음
- 일시 반입절차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음¹²¹⁾

118) 19 CFR 191.32 (c) Determination of commercial interchangeability

119) 19 CFR 191.35 Notice of intent to export; examination of merchandise

120) UCC 제250조 제1항

- 물품을 사용함에 따라 통상적인 가치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물품의 성질 또는 그 사용 목적에 미루어 동일성을 확인할 수단이 없더라도 절차의 악용을 초래하거나 동등물품에 관해 정해진 조건에 합치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함
- 세관당국은 일시 반입절차에 있는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기간 또는 그 후에 계속되는 세관절차에 두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함¹²²⁾
-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자의 책임하에 물품을 일시 반입절차에 둘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함
 - 허가된 사용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되지 않은 경우 세관당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일시 반입절차에 있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입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일시 반입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일시 반입절차에 놓인 날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다면 과세되어야 할 수입관세의 3%로 정함¹²³⁾
- 해당 금액은 일시 반입하에 있는 기간 동안 매달 또는 기간에 해당되는 날에 대해 과세됨
 - 수입관세는 물품이 일시 반입절차에 있는 날에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됐다고 가정된 경우에 납부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21) UCC 제250조 제2항

122) UCC 제251조

123) UCC 제252조

나. 대여 후 반환되는 정기구독 물품의 감세 또는 환급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는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감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500만원 이상이며, 국내제작이 곤란함이 입증된 물품에 한하여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가 경감됨

- 또한 수입물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도 수입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
 -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한 물품은 수입된 상태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대여방식으로 수입 후 공급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재수출되는 정기구독 물품은 관세를 감면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음
 - 정기구독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세가 감면되지 않고, 국내에서 구독자가 사용한 후 재수출되므로 환급의 대상 또한 아님

- 미국의 경우 특별한 목적 없이 소비자가 사용하기 위해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은 수입 시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재수출 시 환급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제조 또는 생산의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만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조 또는 생산 외의 사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 또한 EU도 일시 반입 물품이 EU의 관세영역 내에서 통상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수입관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 반입절차 규정에서 물품의 변경을 가하는 목적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사용으로 인한 통상의 가치 저하는 제외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미국 및 EU는 대여 방식의 구독물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한 후 수출되더라도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재수출 전 세관의 검사가 필요하고, EU 또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함
 - 다만 미국은 수입물품과 상업적 호환이 가능한 경우 대체물품이 수출되어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하고 있음

- 이는 물품이 재수출되는 경우 국내에서 물품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임
 -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이 최종적으로 소비되지 않은 국가에서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내용연수 내에서 국내에서 사용된 후 재수출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내용연수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다면 해당 물품의 모든 가치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여 소비된 가치만 과세하는 것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부합함

- 즉 수입물품에 대해 부담한 관세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된 가치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물품의 내용연수에 대비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관세의 부담 비율을 조정한다면 국내에서 사용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안으로는 대여방식으로 구독된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같이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일부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구독의 경우 물품을 수입하는 당시 물품의 구독기간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구독기간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구독을 중도해지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함
 - 따라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사전 감면보다는 사후 환급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국내 사용 후 재수출에 따른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훼손이 명백하거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물품의 내용연수에 비해 국내 사용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등

4. 기능구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

가. 수입 후 기능 활성화 관련 사례

1)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물리적 변형 없이 수입 후 기능 개선을 위해 지급한 대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 지급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 후 일부 채널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ID가 기재된 인쇄물의 대가를 해당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함
- 이는 수입물품의 기능 개선은 별도의 거래라기보다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변경이며,

그에 대한 비용은 수입 후 지급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임

- 실제지급금액은 그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수입 후 기능 확대를 조건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함

〈표 IV-3〉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우리나라)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수입자는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관세율 0%, 부가가치세 과세)에 분류되는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함 - 이 후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사용범위 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ID가 기재된 인쇄물을 수입신고하면서 기타 인쇄물(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음 - 처분청은 인쇄물의 가격을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주장 - 인쇄물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ID가 기재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서 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수입신고시점의 정상인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한 신고내용은 정당함 -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구매행위는 2006년 8월에 종결되었고, 2007년 5월 경영환경 변화로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처리용량을 향상하기 위한 인증프로그램 구매를 결정하여 인쇄물을 수입하게 된 것으로 인쇄물의 구매는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구매와 다른 별개의 구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청의 주장 -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에는 수입 당시 이미 확장가능한 448개의 채널이 갖추어져 있고 인쇄물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ID가 기재된 인쇄물에 불과함 - 인증소프트웨어 또한 수입 당시에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으나 잠금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320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을 해제하는 인증소프트웨어 즉 인증키에 불과함 - 따라서 결국 인쇄물의 가격은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완전하게 구동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라 할 것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기와는 상관없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므로 인쇄물의 가격을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및 분석 -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는 수입 당시 448개 채널 및 테스트 관련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고, 동 물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물리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 인증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320개 채널의 잠금을 해제하여 동 채널을 고속채널로 변환하는 단순한 인증소프트웨어에 불과함

〈표 Ⅳ-3〉의 계속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패스워드가 적혀 있는 물품으로서 동 물품 수입신고 시 신고한 가격을 단순히 인쇄물의 가격 또는 인증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완전하게 구동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가격은 당해물품 가격에 가산되는데,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는 업그레이드 거래형태를 가진 물품으로서 그 가격은 기본기능 사용조건으로 지불되는 가격임 - 이후 별도로 수입하는 인증서 및 인증서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은 별도의 수입거래이기보다는 기능 개선으로 사실상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에 대한 추가 지급금액이므로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음 - 처음부터 상위기능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과 기본기능 제품 수입 후 상위기능으로 개선하는 제품의 과세가격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기능 개선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동 거래형태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 기능 확대를 조건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수입 후 사후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부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처분청이 인쇄물의 가격을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 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조심 2009관0041, 2010. 11. 11.

2) EU

- EU는 수입 당시 장착되었지만 비활성화되어 있던 기능을 수입 후 활성화하는 대가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소비자가 유통사를 통해 주문하여 수입한 자동차에 활성화되지 않았던 기능을 수입 후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대가를 자동차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 이는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과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별도의 거래로 보아 기능의 구매는 수출판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 수출판매의 대상이 아닌 기능의 구매계약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님
 - 따라서 기능의 구매비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가산되지 않음

〈표 IV-4〉 수입 이후 특정 기능을 활성화한 사례(EU)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제3국에 위치한 제조자 X는 자동차를 그의 유통사인 유럽의 Y에게 판매하며, 두 회사는 특수관계이지만 특수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U 시장에 판매될 자동차는 제조과정에서 사전 설치된 강수 감지 센서, 좌석 열선, 운전자 졸음 감지, 디지털 라디오, 유럽 지역을 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각지대 도우미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능이 장착되어 있음 - 그러나 자동차가 EU의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때에는 EU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능만 활성화되어 있음 - X와 Y가 합의한 자동차의 가격에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의 장착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EU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활성화된 기능뿐 아니라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의 장착비용도 포함됨 - 그러나 특정 기능의 경우 최종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선택사항으로 판매되고, 구매자의 추가 지급의 대가로 활성화되며, 이러한 기능의 활성화 가격은 X와 Y가 합의한 자동차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음 - EU의 고객 Z는 Y에게 추가 선택사항으로 강수 감지 센서와 좌석 열선 시스템이 장착된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주문함 - Z의 주문에 따라 해당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된 자동차가 판매자·제조자인 X와 구매자·유통업자인 Y의 판매계약의 대상이 되고, 판매계약은 자동차가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체결됨 - Y는 자동차를 EU의 관세영역에서의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위하여 신고를 하고, 반출 후 유통업자 Y는 자동차를 Z에게 재판매함 - 이때 자동차의 최종 구매자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음 - 이후 Z가 다른 기능인 디지털 라디오의 활성화를 위하여 Y 또는 X로부터 소프트웨어 키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공받으며, 소프트웨어 키는 종이나 USB 장치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음 - 기능의 활성화는 자동차의 컴퓨터나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 키를 입력함으로써 Z가 직접 또는 공인 대리점을 통하여 할 수 있음 - 이 경우 Z가 디지털 라디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Y 또는 X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 자동차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검토해야 함 - X와 Y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은 EU의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므로 해당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판단 - 제시된 사실에 따르면 최종 구매자 Z가 주문한 자동차는 강수 감지 센서와 좌석 열선이 장착된 상태로 EU 관세영역에 반입되었고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됨 - 해당 추가기능이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Y가 X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거래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됨 - Z가 디지털 라디오의 추가기능을 구매하는 것은 자동차가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된 이후 Z와 Y 또는 X 사이에 별도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X와 Y의 계약, Z와 Y 또는 X의 계약은 서로 독립적인 계약임

〈표 Ⅳ-4〉의 계속

사례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추가 소프트웨어 기능의 접근에 대해 Z가 Y 또는 X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입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 두 가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수입된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X와 Y가 체결한 판매계약을 기초로 결정됨 -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X가 Y에게 자동차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거래 가격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됨 - Z의 요청에 따른 디지털 라디오와 같은 추가기능의 활성화는 X와 Y의 판매계약의 대상이 아님 - Z가 Y 또는 X에게 지급한 활성화 수수료는 Y가 X에게 지급한 자동차의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음 - 따라서 추가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Z가 Y 또는 X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관세평가 목적상 고려대상이 아님

자료: 강동익·이재선(2022), pp. 182~184, (EU DG TAXUD(2022), pp. 168~170에서 재인용)

나. 기능구독에 대한 대가의 실제지급금액 포함 여부 검토

- 우리나라와 EU는 수입물품의 기능을 사후에 개선하거나 추가하는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사후 기능 개선을 수입물품의 거래변경으로 보아 해당 비용을 과세한 반면 EU는 이를 수입거래와 별개의 거래로 보아 해당 비용을 과세하지 않음

- 이는 수입 후 발생한 기능 활성화라는 행위가 수입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포함되는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우리나라와 달리 EU 사례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수입자와 수출자가 거래하지만 이는 기능 활성화의 수출판매 포함 여부의 판단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EU는 기능 추가를 소비자가 수입자를 통하여 주문하는지, 소비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요청하는지와 상관없이 수출판매와 별도의 거래로 보았음

- 물품 수입 후 기능을 구독하는 경우도 해당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기능구독을 수출판매에 포함되는 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기능구독은 그 소비방식이 구매가 아닌 구독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거래내용이 해당 사례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임
- EU 사례의 경우 추가기능의 구매와 수입물품 구매를 단순히 기능의 구매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수입 당시 소비자가 요청하였던 기능에 대한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하였으나 수입 후 추가 주문한 기능에 대한 대가만 과세하지 않음
- EU의 사례처럼 거래의 시기에 따라 수출판매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거래대상, 당사자에 따라 수출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수입 후 기능구독에 따른 대가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기능구독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한편 우리나라는 기능 활성화의 거래대상을 기능 자체로 보지 않고, 수입물품에 이미 장착된 기능을 개선 또는 확대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 거래의 변경으로 봄
 - 따라서 기능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판단에 따르면 기능구독도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에 추가된 거래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구독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구독료를 기능구독에 대한 대가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가산하여야 함
- 이 경우 소비자의 기능구독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기능구독에 대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단기간 구독자와 영구 구독자와의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관련 사례에서 수입 당시 상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와의 과세형평 문제를 상위 기능 활성화 비용의 과세 근거로 들었음

- 따라서 기능구독의 경우도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의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 기능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기능을 특정 기간만 구독하는 소비자 간의 과세형평을 지킬 수 있음

- 구독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은 소프트웨어의 인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그 구독료를 사용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구독기능은 물품에 이미 장착된 장치를 통해 구현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으며,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V. 시사점 및 결론

- 관세는 유형의 물품에 대해 발생한 납세의무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대물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임
 - 소비자가 물품 수입 시 직접 관세를 납부하며, 수입자가 소비자에게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함

-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소비는 최근 구독이라는 새로운 소비형태가 출현하면서 그 패턴이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 소비자는 생필품과 같이 주기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자동 반복하여 구매함
 - 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닌 대여나 접근권한을 통해 사용하고 경험하는 형태로 소비방식이 확대됨

-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에 있어 구독과 같은 새로운 소비형태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이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독형태의 수입이 확대된다면 관세감면의 적용, 관세평가와 같은 관세 과세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먼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의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하여 소액면세 규정을 검토하거나 거래가격의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기구매하는 물품이 소량·소액인 경우 매 수입 시마다 소액면세가 적용되지만 이는 소액면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구독이라는 계약을 통한 향후의 매출에 대한 보장에 대해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가격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WCO 권고의견에서는 누적수량을 기준으로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 할인이 확정되기 전에 판매된 수량에 대한 소급적용은 명확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장래의 구매에 대하여 할인이 미리 제공되는 경우 이를 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이뿐만 아니라 소비의 방식이 구매를 통한 소유 외에도 대여나 접근권한 허용에 따른 사용과 경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관세 과세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대여나 접근권한 허용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판매가격과 유사한 가격을 찾거나 산출하여 과세함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품의 수출판매를 위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한 거래 가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관세평가의 원칙임
 - 이러한 거래가격이 없거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의 결정방법이 적용되며, 후순위의 방법 또한 거래가격과 유사한 가격이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된 가격임

- 즉 관세의 과세는 물품의 판매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대여나 접근권한의 허용과 같은 소비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수입물품을 대여나 접근권한의 허용을 통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이에 따라 대여나 접근권한의 허용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이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구독을 해지함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 구독기간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권리사용료는 판매가 아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식도 구독물품에 대해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권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물로서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권한을 얻는 방식으로 거래됨
- 기능구독도 구독자가 기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사용료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권리사용료와는 다르게 구독료의 지급이 없다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사용료의 일종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와 같이 구독과 같은 새로운 소비형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세 과세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아직은 구독형태의 수입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에 따른 사례가 많지는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관세는 물품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구독료의 과세와 관련한 명확한 과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 강동익·이재선, 『주요교역국의 관세행정 결정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2, 2021.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미나·박설우, 「구독경제 유형과 제품 유형 차이가 구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유통협회, 2023, pp.61~81
- 박현길, 「구독경제」, 『마케팅』, 53(7), 한국마케팅연구원, 2019, pp. 31~44
- 백혜현·김길선, 「공급자 관점의 구독경제 유형화와 디자인 팩터 사례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3호, 경영컨설팅학회, 2021, pp. 331~349
- 심혜정, 「글로벌 구독경제 현황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Trade focus 2021년 6호, 한국무역협회, 2021.
- 유승한, 「자동차 SW 구독의 시대 도래」, 『오토저널』, 제44권 제9호,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pp. 28~30
- 이홍숙,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한국무역상무연구학회, 2020, pp. 189~216
- 조혜정, 「구독경제의 현황 및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제19-03호, 중소기업연구원, 2019.
- _____, 「이용자 관점에서 본 구독경제 현황에 대하여」, 『KISO 저널』, 제42호, 한국인터넷 자유통정책기구, 2021, pp. 44~46
- EU DG TAXUD,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2.
- Zuora, *The Subscription Economy Index*, 2023.

statista, “Market size of the digital subscription economy worldwide in 2020, with a forecast for 2025, by segmen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5064/market-size-digital-subscription-economy-worldwide-by-segment/> 검색일자: 2024. 2. 5.

Zuora, “UBS Declares: It’s Worth Investing in the Subscription Economy,” <https://www.zuora.com/subscribed/ubs-declares-its-worth-investing-in-the-subscription-economy/>, 검색일자: 2024. 2. 5.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f0fc780f2dc486bb105511f2a65eaa6>, 검색일자: 2024. 2. 2.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64&cid=40942&categoryId=40507>, 검색일자: 2024. 2. 6.

네이버 IT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5028&cid=42346&categoryId=42346>, 검색일자: 2024. 2. 16.

달러쉐이브클럽, <https://us.dollarshaveclub.com/>, 검색일자: 2024. 2. 8.

돌체구스토, <https://www.dolce-gusto.co.kr/subscription-event>, 검색일자: 2024. 2. 8.

메르세데스 벤츠, <https://shop.mbusa.com/en-us/connect/pdp/acceleration-increase/709>, 검색일자: 2024. 2. 15.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https://www.mercedes-benz.co.kr/passengercars/services/mercedes-me/digital-extras.html#additional-digital-extras>, 검색일자: 2024. 2. 15.

볼보, <https://www.volvocars.com/us/care-by-volvo/>, 검색일자: 2024. 2. 15.

_____, <https://www.volvocars.com/us/care-by-volvo/faq/>, 검색일자: 2024. 2. 15.

술담화, <https://www.sooldamhwa.com/subscribe?damhwabox=basic>, 검색일자: 2024. 2. 8.

와이즈리, https://wisely.store/category/%EA%B5%AC%EB%8F%85%ED%95%98%

- EA%B8%B0/100/, 검색일자: 2024. 2. 8.
- 일리카페, https://shop.illycaffè.co.kr/order/subscription_main.php, 검색일자: 2024. 2. 8.
- 테슬라 코리아, https://www.tesla.com/ko_kr/support/connectivity#current-owner-impact, 검색일자: 2024. 2. 15.
- 퍼플독, <https://www.purpledog.co.kr/subscriptionGuide?tab=02>, 검색일자: 2024. 2. 8.
- 포르쉐, <https://www.porsche.com/usa/accessoriesandservices/porschedrive/subscription/>, 검색일자: 2024. 2. 15.
- _____, <https://www.porsche.com/usa/accessoriesandservices/porschedrive/faq/>, 검색일자: 2024. 2. 15.
- 현대자동차,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longtermbenefit>, 검색일자: 2024. 2. 15.
- _____,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hyundai-selection-information>, 검색일자: 2024. 2. 15.
- _____, <https://www.hyundai.com/kr/ko/digital-customer-support/app/hyundai-selection/monthlysubs>, 검색일자: 2024. 2. 15.
- BMW, <https://www.bmw.co.uk/en/shop/ls/cp/connected-drive>, 검색일자: 2024. 2. 15.
- _____, https://www.bmw.co.uk/en/shop/ls/dp/DrivingAssistant_Plus_SFA_gb, 검색일자: 2024. 2. 15.
- EU DG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eu-customs-reform_en, 검색일자: 2024. 2. 19.
- _____,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security/import-control-system-2-ics2-0/import-control-system-2-release-2_en, 검색일자: 2024. 2. 19.

관세연구 23-02

구독료와 관련있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상 취급방법

발 행 2023년 12월 30일

저 자 홍병진 · 이재선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82-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